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1) 재래시장 ⇒ 전통시장

2)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나.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을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35조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 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 회계연”을 “회계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조”를 “이 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40조 앞의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미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 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 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 ----- 같은 법 ----- -----전 통시장-----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 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 성화구역----- -----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35조제4항 과태료의 징 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8.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 준-----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생략)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미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미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

제2조(정의) -----
-----.

1. ----- 시장·상권활성화구역 -----

-----.

2. (현행과 같음)

3. -----
----- 각 호 -----
----- 기간 -----

-----.

4. -----

----- 따라 -----

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 6. (생략)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미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호중 구미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_____.

5. · 6. (현행과 같음)

7. _____

_____ 시

장 · 상권 활성화 구역 _____

8. -----
----- 각 호 -----

----- 각 호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유통산업발전법」 제8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구미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조에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
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
상인 곳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
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생략)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미시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현행과 같음)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 상권활성화구역-----
-----.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

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
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
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다.

1. ~ 4. (생략)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
미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
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생략)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
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
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영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
일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 4. (생략)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점가의 상
인회(이하 “상인회” 라 한다)
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 .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

----- 사유 없이 -----

3.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생략)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구
미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
략)

②상인회는 구미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
산관리 현황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
행과 같음)

②-----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회계연-----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구미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생략)

②구미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

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미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

②-----
----- 각 호 -----

----- 해당 -----

-----.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시장·상권활성화구
역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제35조(위탁관리) ①구미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 이
조-----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탁관리)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미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미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 시장·상권활성화구역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미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제>

<삭제>

따라 구미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
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미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
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때에는 구미시장은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삭 제>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 구미시장의 과태료 처분
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미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미시장은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
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구미시
시세 조례」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삭 제>

관 련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0.6.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9.10.7]

[별표] <개정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나.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다.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300